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일수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3
----------	-----

발의연월일 : 2024. 1. 15.

발 의 자 : 김일수·이철구·최태림
박선하·임기진·백순창
박성만·서석영·이선희
김희수·이형식·박용선
이춘우·최병근·김창혁
김대진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사회보장의 질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에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사회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검토 완료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40, '24. 1. 9.)

나.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혁신담당관(정책기획관-249, '24. 1. 5.)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249, '24. 1. 5.)

라. 해당부서 의견: 별도의견 없음

-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정책기획관-249, '24. 1. 5.)

마. 비용추계서: 붙임

7.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담기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북행복재단에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처리
2.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원 간 연계, 조정, 의견수렴 및 전파
3.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주관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
4. 기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지정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처리

2.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원
간 연계, 조정, 의견수렴 및 전
파

3.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주관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

4. 기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
기구를 지정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

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내용

1. 재정수반요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운영(안 제10조의2)

- 개정안은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

나.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평균 107.27%)*을 반영 함

* 물가 상승률 : 2021년 102.50%, 2022년 107.72%, 2023년 111.59%(KOSIS 제공)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할 경우 [표 1]과 같이 1차년도 300백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 총 1,735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4~2028년(5차년도)

(단 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전담기구 설치 운영비	300,000	321,810	345,200	370,300	397,222	1,734,532
	□ 총 비용	300,000	621,810	967,010	1,337,310	1,734,532	1,734,532

4. 재원조달 방안

(단 위 : 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 비	일반회계	300,000	321,810	345,200	370,300	397,222	1,734,532
	특별회계						
	기 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300,000	621,810	967,010	1,337,310	1,734,532	1,734,532

5. 부대의견

경북행복재단 연구결과물(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모델 개발)을 토대로 예산액을 추계하였으며, 실제 연도별 소요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 성 자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주사 김현미(054-880-371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개정안 제10조의2(전담기구의 지정 등)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나. 비용추계 방법

〈 비용 추계 방법 〉

$$\text{소요비용} = (\text{인건비} + \text{운영비} + \text{사업비}) \times \text{물가상승률}$$

2. 비용추계시 중점 고려사항

가. 향후 전담기구 설치 기관의 인건비 기준을 반영할 것이며, 실제 연도별 소요 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예산 규모

구 분		예산액 (단위 : 천원)	비 율	비 고
계		300,000	100%	
인 건 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145,000	48.3%	4명
운 영 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50,000	14.7%	
사 업 비	연구비(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조사 등), 교육·간담회비, 회의비 등	105,000	35.0%	

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전담기구 설치 운영 예산의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7억 3,45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3] 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4~2028년

(단 위 : 천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전담기구 설치 운영비	300,000	321,810	345,200	370,300	397,222	1,734,532
합 계	300,000	621,810	967,010	1,337,310	1,734,532	1,734,532



경 상 북 도



수신 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사회복지과-2(2024. 1. 2.)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확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0조의2(전담기구의 지정 등)에 따라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 제10조의2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 연구용역 결과(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모델 개발/2023. 7./경북행복재단)를 토대로 4인 기준(연 3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례안 시행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재정 수반 사항에 대하여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경 상 북 도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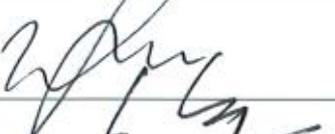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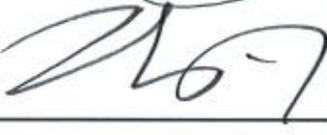
관인생략

주우관 **권오순** 예산총괄담당 **권미숙** 여신담당관 **전명 2024. 1. 2. 윤혜만**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1 [2024. 1. 2.] 접수 사회복지과-75 [2024. 1. 2.]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27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발의의원 서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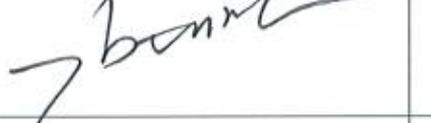
(제명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김 인우		
이 칠우		
최 재환		
박 승우		
김 기진		
박 수광		
박 성민		
서 석영		
이 선희		
김희숙		

※ 서명: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씌(서명 시 정자로 기입)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이 형식		
박 영진		
이 현우		
김 병근		
김 창혁		
김 대진		

※ 서명: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씌(서명 시 정자로 기입)